#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1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 송석준 · 문정복 · 김선교

이종배 · 성일종 · 박충권

김형동 · 강대식 · 이종욱

김성원 · 최형두 · 박성훈

곽규택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동안의 분업구조를 깨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장까지 선점 하려는 전략을 시행하여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게다가 AI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열리면서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전면적 재편이 되기 시작하는 등 그동안 대 한민국 경제의 기반이 되어온 반도체산업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 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 트트랙을 도입하며, 전력 및 용수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 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 조 및 제3조).
- 나. 정부는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반도체산업 관련 동향조사 등과 통계를 작성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 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에서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반도체 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세계최대 규모의 광역적 범위의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운영, 생산시설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각종 특례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전력 수급과 용수확보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은 부담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함

(안 제9조).

- 바.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정부가 반도체 설계기술, 연구개발, 고용유지, 근로자의 복지, 산학협력, 특화교육, 석·박사 인재양성,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
- 사.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성능검증 및 실증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1 3조).
- 아.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을 설치하여 반 도체산업 인력양성, 연구개발, 경영 등에 있어서 지원하도록 하되, 정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연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4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관련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5조).
- 차.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도체메가클 러스터 내의 사업행위나, 국가의 기반시설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법 률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내에서의 보조금 지급, 기반시설설치,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의 산업입지 관련 규제완화와 반도체관련중소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 타. 정부로 하여금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자금지원, 테스트베드 지정・운영, 국내 소부장・시스템반도체제품 우선구매 시조세・재정지원, 국가핵심인재지정・지원, 클러스터 내 소부장 첨단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조성・부지할당・임대료감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파.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소부장 첨단 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지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별표를 개정함 (부칙 제3조).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반도체산업"이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등을 설계, 제조, 공급, 연구, 개발 등을 하거나 이 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패키징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반도체메가클러스터"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산업의 혁신생 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 ·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3. "연대협력모델"이란 반도체산업 등과 관련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 제3조(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제4조(타 법률과의 적용 관계) 이 법의 내용 중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례와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내용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더 유리한 때에는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5 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관한 기본방향
  -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 수급과 용수확보를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과 안정적인 용수확보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5. 반도체산업메가클러스터의 조성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 7. 반도체 소재 · 부품 · 장비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사항
- 8.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9. 반도체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 10. 반도체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2.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

- 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반도체산업 관련 동향 등의 조사와 통계작성) ① 정부는 매년 반도체산업에 관한 국제적·경제적·사회적 동향과 기술개발현황을 조사하고, 미래의 전망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동향, 기술개발현황조사, 미래전망 예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기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하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범위, 종류, 수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 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상황 점검, 이행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 수급과 용수확보를 위해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과 안정적인 용수확보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관계 부처 규제의 개선과 중복방지 및 각종 인허가 절차개선 등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 5.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 세제적 특례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7. 반도체메가클라스터의 지정·조성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8.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 례에 관한 사항
- 9.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
- 10. 반도체산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
-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1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3. 반도체산업의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 14. 반도체산업의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5. 반도체산업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2명의 부위원장을 두되 부위원장 중 1인은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 3. 기타 대통령이 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을 간사위원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 여 위원회에 반도체산업발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 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 ⑥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요 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8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 이 지정한다.
- 1. 제11조제1항의 육성계획에 부합할 것
- 2. 반도체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 3. 반도체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 4.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5.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이 있을 것
- 6.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7. 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운영, 생산시설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세제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반도체메가클러 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① 정부는 반도체메가클 러스터의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과 안정적인 용수확보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그 밖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 제10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더 이상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 육성계획) ① 정부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계획(이

- 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의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육성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인력양성 등을 위한 정부의 추진사업)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반도체산업 인력의 반도체 설계 등 기술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 5. 퇴직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7. 국내 반도체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 간 산학협력과 교육연계에 관한 사항
- 8. 인공지능·시스템 반도체 특화교육, 기업수요형 연구개발,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등 반도체 관련 석·박사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 9.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언어환경, 정주여건, 비자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10. 해외 우수 연구자와 연구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해외 인력교류·파견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추진사업) ①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성능검증사업 및 실증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추진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 내용 그리고 시행방안 및 각종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확보, 연구개발 및 경영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반도체산업 시장 및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 2. 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 3.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 집·관리
  - 4. 기업의 반도체설계 등 경쟁력 강화와 발전지원 및 반도체 분야 세부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 5. 반도체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
  - 6. 반도체산업 관련 우수인력 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사업
  - 7. 반도체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성능검증사업 및 실증사업
  - 8. 반도체산업 발전과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 반도체산업의 기술혁신, 연구개발, 경영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 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반도체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의 기업 등이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의 반도체 사업 및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중고품을 포함한 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정부가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 제7조에 따라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 등 일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제7조제1 항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 제8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 2. 제9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3. 제13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 4.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 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8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입지 및 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내에서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산업단지, 공업 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서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류기간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 등의 기준과 절차 및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③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에서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중소기업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이라 한다)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중소기

- 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총 누적금액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1.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2.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지정·운영
  - 3. 국내에 있는 기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경우, 성과급 지급, 조세감면, 또는 기타 필요한 재정적 지원
  - 4.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핵심적 필요인력 에 대한 국가핵심인재지정 및 지원
  - 5.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한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 소재·부품·장비 첨단 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부지할당,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은 이 법 시행 당시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에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이미 진행 중인반도체 산업기반시설에도 적용한다. 단, 비용부담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도체 산업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9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	반도체메가클러스터
243	제8조				12-11 11/1 2 1 1
05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	소재・부품・장비 첨단
250	제20조				연구개발단지
051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	시스템반도체융합 연구
251	제20조				개발단지